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 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 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

2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 공원) 결정변경(안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공공공지	강북구 우이동 186-5	4,267	감)4,267	-	2009.10.08. (강북구고시 제2009-60호)	

○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공원	문화공원	강북구 우이동 186-5	-	증)4,267	4,267		

3. 입안사유

- 우이경전철 개통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교육·문화·체험의 장소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- 도시계획시설 : 공공공지
- 기타구역 : 개발제한구역

5. 주민 의견청취

- 열람기간 : 2018. 5. 24. ~ 6. 7.
- 공고게재 : 일간신문(문화일보, 아시아경제), 시보, 구보 등
- 의견청취결과 : 없음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공원조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치구 관할 공원조성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 협의의견 반영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교부금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음 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에 의거 사유지 내 구 건축물 건립에 따른 대책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제2항1호 및 같은법 제13조제3항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어 설치할 계획임 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장으로 조성되어 2년여 경과시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타당성 및 당위성 제시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 여건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산악관련 행사 및 참여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, 강북구의 관련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, 대상지가 북한산의 메인 등산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이용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• 기존 광장 및 야외무대에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조성 시설 변경 및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였음 	반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도시계획 상임기획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정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관련, 대상지의 입지특성(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지), 용도지역·구역(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), 주변 건축물 현황(4층 이하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계획(입면디자인, 높이 등) 수립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변과 조화롭고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, 공원조성계획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을 결정하겠음 	추후 반영

7. 강북구의회 의견청취

- 의견청취일 : 2018. 7.23.
- 의견청취결과 : 원안동의

8. 환경성 검토

- 기 조성된 공공공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항으로 자연훼손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,
- 산악문화체험관 설치에 따라 일부 스카이라인 변화는 예상되나, 사업으로 인한 생태면적, 녹지훼손, 지형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9. 기타

- 재원조달계획
 - 총 사업비 : 1,902백만 원(시 특별교부금 1,800백만 원 포함)
 - ※ 별도 보상금액 불필요(시유지)

○ 추진경위

- '09.10. 8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(강북구고시 제2009-60호)
- '15. 2.20. 공공공지 조성 완료
- '18. 4.30.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공지, 공원) 결정(변경)입안
- '18. 5.24. ~ 6. 7.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
- '18. 7.23. 강북구의회 의견청취(원안동의)
- '18. 7.30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 공원) 결정(변경)요청
(강북구→시설계획과)

붙임 : 관련도면 각 1부. 끝.

□ 위치도 및 현황사진

○ 위치도



○ 대상지 현황사진

<p>① 대상지 북서측 산책로</p>	<p>② 대상지 내부</p>
<p>③ 대상지 남동측 진입 도로</p>	<p>④ 대상지 내부 광장</p>

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(기정)도

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(안)도

